

2016년 제8회 대한국제법학회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간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및 통과권 관련 일련의 사태에 연관된 사건

오리온(Orion)국/페가수스(Pegasus)국

1. 오리온(Orion)국은 연안국인 페가수스(Pegasus)국과 내륙국인 콜롬바(Columba)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이다. 오리온국이 육로로 해양에 접근하기 위하여서는 페가수스국을 통하여 가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거리도 가깝다. 오리온국의 수도는 리겔(Rigel)이고, 페가수스국의 수도는 에니프(Enif)이며, 콜롬바국의 수도는 팍트(Phact)다.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을 통과하여 해양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외교적인 협상을 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2.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주로 수입하여 그 수요를 충족하고 있고, 페가수스국은 콜롬바국산 석유에 의존하여 전력 생산 기타 산업 수요에 충당하고 있다. 콜롬바국이 내륙국인 관계로 페가수스국은 비용이 많이 드는 육로 수송을 통하여 콜롬바국산 석유를 공급받아 왔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오리온국은 콜롬바국으로부터 콜롬바국이 생산하는 석유를 자국을 통하여 페가수스국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콜롬바국으로부터 페가수스국으로 석유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해주면 페가수스국이 오리온국 국민과 물자의 육로 통과권(이하, 통과권)을 부여할 수 있으니 외교협상에 응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4. 관련 3국의 외무부장관은 페가수스국의 수도 에니프(Enif)에 모여 3국간에 콜롬바국에서 페가수스국으로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부설 문제와 오리온국의 페가수스국 통과권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협정을(이하, 에니프협정) 2014년 5월 1일에 서명했다. 동 협정에는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사이에 비정상적인 외교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할 수 없으며, 동시에 오리온국의 페가수스국으로의 통과권도 페가수스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침해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협정을 통하여 오리온국은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간의 국경에서 고속도로로 100km만 가면 페가수스국의 가장 큰 항구이자 수도인 에니프(Enif)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고, 콜롬바국과 페가수스국간에는 오리온국을 관통하는 200km에 이르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석유수송방법을 확보하게 되었다.

5. 에니프협정 제10조는 “체약당사국의 국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체약당사국이 비준한 날 익일부터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본 협정은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리온국은 2014년 6월 30일에, 콜롬바국은 2014년 7월 10일에, 페가수스국은 마지막으로 2014년 8월 31일에 각국의 국내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동 협정을 비준하였다. 이에 동협정은 페가수스국이 비준한 날 익일인 2014년 9월 1일에 발효하였다. 에니프협정이 발효하자마자, 동 협정은 UN헌장 제 102조에 따라 UN 사무국에 등록되었다.
6. 에니프협정 제3조는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간에 비정상적인 외교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페가수스국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오리온국의 통과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 2015년 2월 1일 콜롬바국 팩트 소재 오리온국 대사관에서 콜롬바국의 반체제 인사 아무르(Amur)를 비호하는 일이 발생하자, 콜롬바국은 오리온국에게 아무르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오리온국이 콜롬바국의 인도요청에 응하지 않자 동년 3월 1일부터 콜롬바국 당국은 오리온국의 대사관을 봉쇄하고 오리온국 대사관에의 일체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이에 오리온국은 콜롬바국에게 콜롬바국의 대사관 봉쇄조치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공간의 불가침권을 침해하는 국제위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콜롬바국의 조치를 오리온국이 제재하는 방법은 콜롬바국에서 페가수스국으로 석유가 운송되지 못하도록 하여 콜롬바국과 페가수스국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8. 오리온국이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면 콜롬바국은 석유수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페가수스국은 전력생산 및 산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오리온국은 인지하고 있었다.
9. 이에 오리온국은 2015년 4월 1일 콜롬바국으로부터 페가수스국으로 가는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0. 오리온국이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페가수스국은 에니프협정에 따라 오리온국이 향유하는 통과권을 폐쇄조치를 해제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부여하지 않겠다고 오리온국에 즉시 통고하였다.
11. 페가수스국이 통고한 후 정하여진 30일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온국이 폐쇄 조치를 해제하지 않자, 페가수스국은 2015년 5월 1일부로 오리온국

의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공표하면서 관련 국경조치를 취하였다.

12. 통과권이 정지되자 페가수스국에 소재하던 오리온국 국민들이 통과권 정지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그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여 페가수스국의 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기로 결의하였다.
13. 일단의 오리온국 국민들이 페가수스국의 행정관청이 밀집한 페가수스국 수도 에니프의 피칸거리에 모여 시위를 진행하는 중에 일부 시위자들의 선동으로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페가수스국에서 통과권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내무행정부에 돌을 던지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등의 행위를 집단적으로 하였다.
14. 시위 사태에 직면한 페가수스 당국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고자 하였다. 물대포와 최루가스 방출 차량을 동원한 시위 진압과정 중에 오리온국 국적을 가진 시위 참가자 수십 명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15. 이러한 시위가 격화되고 오리온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조치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여겨지자, 페가수스국은 더 이상 오리온국과 에니프협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0조에 근거하여 2015년 8월 15일에 에니프협정을 종료한다고 오리온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종료통보는 콜롬바국에는 행해지지 않았으며, 페가수스국의 오리온국에 대한 종료통보에 대하여 콜롬바국은 어떠한 의사도 표명하지 않았다.
16. 페가수스국이 에니프협정 종료를 선언하자, 오리온국은 2015년 9월 1일 페가수스국이 에니프협정 제4조에 반하여 오리온국의 통과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 주장은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17.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 주장에 대하여 오리온국이 그 적법성을 문제삼자, 오리온국을 통하여 석유를 수송받아야 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페가수스국의 기업들은 페가수스국 관련 당국과 이 사태의 해결과 관련한 협의를 한 후, 일제히 오리온국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폐쇄 조치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오리온국이 폐쇄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리온국에는 페가수스국에서 생산된 공산품 일체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일부 업체는 그 결의 내용을 즉시 실시하였다.
18.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 기업의 오리온국에의 수출 금지 결의는 페가수스국 당국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격렬히 항의하였다.

19. 오리온국은 통과권 행사가 봉쇄된 후, 오리온국의 국가적 사업수행과 관련한 물자를 긴급하게 수송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그 물자를 항공 등 다른 대체적인 방법으로 운송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20. 이러한 오리온국의 국가적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물자수송이 페가수스국 항구를 통하여 제3국으로 수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오리온국은 이 물자 수송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실력에 의하여서라도 통과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판단을 하였다. 그러한 정책판단에 근거하여 관계 당국 회의를 소집하고 논의한 결과, 오리온국으로부터 페가수스국으로의 통과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수송물자를 운반하는 차량과 인원을 군대로 하여금 호송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21. 마침내 오리온국 당국은 2015년 10월 7일 1개 대대 병력이 호송하는 가운데 제3국으로 수송하는 물자를 페가수스국을 통과하여 수송하는 시도를 하였다.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 사이의 국경을 넘어 페가수스국으로 진입한 수송차량과 수송인력은 처음에는 별다른 충돌없이 페가수스국을 통과하였으나 페가수스국의 목적항구 10km를 남겨두고 페가수스국의 경찰당국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오리온국의 수송물자 등을 호송하던 오리온국의 병력은 페가수스국의 경찰 제지를 제압하고 목적항구에 도달하였다.
22. 동 사태가 발생하자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에 대하여 오리온국은 페가수스국의 영역주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이용하여 페가수스국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국제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오리온국에 대하여 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3. 동 사태 후 오리온국과 페가수스국은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수차례의 외교협상을 수행하였으나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24. 에니프협정에는 협정의 종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콜롬바국은 모두 2000년 이전에 UN 및 WTO 회원국이 되었다. 오리온국, 페가수스국, 콜롬바국 이들 모두에 대하여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각각 1980년 7월 1일, 1982년 5월 31일, 1983년 10월 30일에 발효하였고,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도 각각 1970년 8월 31일, 1973년 5월 30일, 1975년 3월 31일에 발효하였다.

25.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양국 정부는 2016년 4월 15일 특별협정(*compromis*)을 체결하여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ICJ에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오리온국이 2015년 4월 1일 석유수송 파이프라인을 폐쇄한 조치는 에니프협정 제 3조를 위반한 것인가?

2) 페가수스국이 2015년 5월 1일에 통과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 조치는 적법한가?

3) 페가수스국은 오리온국 국민이 행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리온국 국민 수십 명을 다치게 한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4) 2015년 8월 15일에 행한 페가수스국의 에니프협정 종료통보로 에니프협정은 종료되었는가?

5) 페가수스국은 자국 기업들이 생산한 공산품을 오리온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하여 오리온국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6) 오리온국은 자국 병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물자를 페가수스국에 수송하고, 수송과정 중에 페가수스국 경찰의 제지를 제압한데 대하여 배상하고 사죄하는 등의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